

나이로비 第2次 會議：算

開途國權益保護에 主眼

強制實施權을 強化

特許廳長 李 相 變

프롤로그

1. 工業所有權의 國際的保護에 關한 파리協約(以下 “파리協約”이라 略稱함)의 改正에 關한 外交會議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東部아프리카 케냐의 首都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會議는 昨年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第1次會議에 이은 第2次會議로서 모든 節次가 第1次會議의 繼開 形式으로 進行되었기 때문에 昨年과 같이 會議任員選出이나 改正案探擇에 關한 節次規則의 探擇等에 時間을 빼앗기는 일 없이 바로

本論으로 들어가 改正案을 討議할 수 있었다.

2. 이번 나이로비 會議는 우리나라로서는 繼續하여 參加하는 會議이지만 昨年의 第1次會議에 읍저버로서 參加했던 것과는 달리 正式會員國으로서 參加한 첫번째 會議라는 특별한 意義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代表團도 昨年에는 읍저버로서 2名만을 選定했었던데 비하여 이번 會議에는 本人을 首席代表로 하고 케냐現地의 姜錫在大使를 交替 首席代表로, 그리고 케냐大使館의 崔大和參事官, 外務部의 黃富弘條約2課長 및 特許廳의 鄭光善法務擔當官 등 3人을 代表로하여 派遣했다.

改正案 마련의 背景

1. 改正案 마련의 動機

第2次世界大戰後 1950年代, 그리고 1960年代 노 애시아, 아프리카大陸에서 新生國들이 大學태어나고 이들이 國際舞臺에 登場하여 國際政治舞臺의 版圖를 바꿔놓은 時期였다.

이들 新生國들은 政治的인 獨立과 함께 經濟的인 開發과 自立意志에 불타 努力を 거듭하여 왔으나 數個國을 除外한 大部分의 國家들은 結果적으로 先進工業國들과 뛰어넘기 어려운 더 많은 隔差가 생겨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現實을 直視하고 이를 改善하기 위해 서는 劃期的인 制度의 改善이 不可避하다는 認識을 갖기始作하였는데 이것이 1970年代에 들어와 論議되기始作한 貧富國間의 問題一이른바 南北問題로서 工業所有權分野에 있어서도

南北隔差의 解消를 為한 努力의 必要性이 力說되었다. 即 1974年 6月 제네바에서 開催된 WIPO의 第6次調停委員會에서 工業所有權을 通過 技術移轉의 效率化, 파리協約을 通過 工業所有權의 國際的保護에 있어서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實質的 不平等의 緩和와 이를 위해서 開途國을 위한 特別措置의 必要性이 印度를 비롯한 開途國에 依해서 強調되고 先進工業國들이 이에 對한 肯定的인 反應을 보임으로써 파리協約의 改正準備作業에 들어갔던 것이다. 換言하면 工業所有權分野에 있어서 南北隔差의 解消를 위하여 開途國의 特別利益을 위한 諸裝置를 파리協約에 導入하여 國際的인 工業所有權保護의 利益에 關하여 先·開途國間에 受惠의 均霑化를 圖謀키 위해 이번 改正案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現行파리協約에 對한 開途國그룹에서 指摘하는 問題點으로서는 現行協約上의 特許制度가個人의 權利保護만을 重視하고 公共의 利益保護

와 權利者에게 義務를 賦課하는데는 疏忽하고 있으며 또한 現行 協約의 諸原則은 先進國의 利益을 위하여 利用되고 있을뿐 開途國들에게는 不利한 制度이므로 先進國中心의 特許制度에서 開途國에 對한 特別待遇를 하도록 調整되어야만 한다고 主張되어 왔다.

따라서 開途國들은 內國民待遇의 原則을 修正하여 開途國 國民에게는 料金을 低額으로 하고 優先權主張期間을 延長해 주어야 하며 特許獨立의 原則에 對하여도 修正을 加하여 開途國에 對한 出願은 先進國의 審查結果(拒絕·取消等)에 따라 處理할 수 있도록 하고 特許後의 無效에 있어서도 先進國에서의 結果에 따라 處理할 수 있도록例外를 認定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特許發明의 不實施에 對한 措置를 強化하여 非自發的 實施權(強制實施權)으로서 通常實施權만이 아니라 專用實施權도 賦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開途國에 對한 技術援助問題를 導入할 것 등을 要求하였다.

會議의 進行

— 그룹間 利害相反으로 難航 —

1. 會議의 停滯

會議는 開會後 바로 改正案의 討議에 들어가는 했으나 각 그룹의 立場과 利害의相反 때문에 全般的으로 膠着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번 會議에서 自그룹에 有利한 特惠規定을 最大한 確保하려는 開途國의 試圖와 現狀維持 내지는 最少限의 讓步와 損失로서 그치고자 애쓰는 先進國들의 防禦努力이 팽팽하게 맞서 會議는 遷遲不振하였다.

改正案마련의 背景에서 說明했듯이 이번의 協約改正이 開途國의 立場을 強化改善하고자 하는 動機에서 出發했기 때문에 改正案의 内容이 大部分 開途國에 有利한 條項을 包含하고 있어 先進國들은 協約의 改正에 消極的이고 否定的인 姿勢를 堅持한 反面, 開途國들은 開途國들 대로 파리協約의 改正이 15年以上의 週期를 두고 이루

어져 왔으므로 多少 時間이 걸리는 限이 있더라

도 이번 機會에 改正案에 反映되어 있는 開途國에 對한 特惠條項을 一舉에 確保하는 것이 得策이라 생각하고 數的優勢와 파리協約改正에 關한 目的宣言等의 名分을 앞세우며 一絲不亂한 姿勢로 基本提案(Basic proposal)의 開途國立場을 固守하였던 것이다.

2. 各그룹의 立場

이번 會議에서 實質적인 討議가 있었던 2個條項 即 第1分科委員會 所管이었던 第5條와 第2分科委員會 所管이었던 第1條를 中心으로 한 각 그룹별 立場은 다음과 같다.

첫째, 第5條는 이번의 改正案中에서 가장 關心의 對象이 된 重要條項이었는데 發明特許의 國內實施義務와 特許品 또는 特許된 方法에 의하여 生產된 物品의 輸入은 實施를構成하지 않는다는 것, 不實施時 特許의 沒收 또는 取消 및 非自發的 實施權의 賦與와 그 要件의 緩和, 非自發的 實施權으로서 通常實施權外에 專用實施權의 賦與의 制度化, 以上의 制裁에 對한 免責을 위한 立證責任의 強化 그리고 開途國에 對한 特則等이一般的으로 特許權의 制限에 依한 特許發明의 活用과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한다는 改正目的에 비추어 開途國의 立場에 有利한 内容을 包含하고 있었다.

이에 對하여 改正案대로의 採擇을 反對하는 先國國家들은 무려 11個案이나 修正案을 提出하면서 會議의 進行을 막았는데 가장 큰 關心事는 非自發的 實施權으로서 專用實施權은 絶對로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밖에 特許權者의 權利에 對한 現行規定 以上的 制限은 反對한다는 立場이었다.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은 特別한 利害關係를 가지지 않으므로 별다른 意見은 없었으나 第1條의 改正에 關한 開途國의 支持를 얻기 위하여 開途國의 立場을 支持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1個月의 會議期間동안 第5條의 討議에 置重했으나 結論을 보지 못하다가 會議의 마지막 날이나 다름없는 10월 23일 늦게야 劇的인 妥結을 보았다.

둘째, 第1條는 第5條의 討議에 밀려 몇번

● 르 뽐 ● 파리協約改正外交會議

의 討議에 그치고 말았는데 本條는 發明者證의 定義를 特許의 定義와 對等하게 規定하고 發明者證制度 採擇國家에 對한 特定技術分野에 있어서의 特惠를 規定하는 内容들에 包含되어 있었으므로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이 特히 關心을 가지고 있었으나 先進國그룹은 特許權에 對한一般的制限이나 特惠規定으로 開途國에 對하여 讓步를 하고 特定技術分野에 있어서 發明者證만의 賦與許容으로 또한 損害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二重의 損失을 防止하기 위하여 强硬한 反對姿勢를 取했다. 開發途上國그룹은 一部國家가 開途國에 對한 特惠內容도 있음을 勘察하여 社會主義國家그룹의 提案에 贊成하라는 意見도 있었으나 大部分의 國家들은 開途國이라도 發明者證制度를 採擇치 않는 限 社會主義國家들에게 特惠를 認定하는 結果가 되고 特定技術分野라고는 하나 發明者證만에 의한 發明의 保護는 權利를充分히 保護할 수 없다는 理由로 反對意思를 表明하였다. 其他의 規定들은 第3分科委員會에서 1回 1時間半의 形式的 討議로 끝나고 말았다.

第5條 採擇의 意義

1. 採擇된 内容

内 容	備 考
[特許 및 實用新案 : 物品의 輸入, 遷用, 不實施, 公益上 利用]	○現行規定 無 ○改正案과 同
(1) (a) 同盟國은 國內法으로 그 國家가 特許를 賦與한 發明 또는 이연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國가의 경우에 잠정적 보호가 부여된 발명은 그 國가의 영토에서 特許의 所有者에 의하여 또는 그의 허가하에서 實施되어야 함을 要求할 權利를 갖는다. (b) 特許된 發明을 포함하는 物品 또는 特허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입은 特許된 發明의 實施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同盟國은 特許된 發明을 포함하는	○現行規定 無 ○改正案과 同

内 容	備 考
물품 또는 特허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特許된 발명의 實施要件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권리를 갖는다.	○現行規定 無 ○改正案과 同
(2) (a) 本條에서 “非自發的實施權”이라 함은 特許所有者的 허가 없이 特허된 發明을 實施할 수 있는 實施權을 말한다. 그 것은 또한 國內法이 特許所有者에게 그러한 實施權을 賦與하도록 義務化하는 경우에 特허소유자가 부여한 特許發明 實施權도 포함한다.	○現行規定 無 ○改正案과 同
(b) 同盟國은 特許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遷用을 방지하기 위한立法措置를 채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에서 제조된 物品을 特許가 부여된 國家로 輸入하는 것은 特許權의 남용을構成하는 상황이 아닌 特허의 没收의 이유로 되지 아니한다.	○現行規定 無 ○改正案과 同
(3) 非自發的 實施權의 부여가 그 러한 남용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허의 몰수를 규정할 수 없다. 최초의 비자발적 實시권의 부여로부터 2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特허의 몰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	○現行規定 無 ○改正案과 同
(4) 特許出願日로부터 4年期間의 滿了日 또는 特허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기일이 전에 不實施 또는 불충실한 實시를 이유로 非自發的 實施權을 適用할 수 없다. 그러한 出願은 特許權者가 非自發的 實施權許與權限 있는 國家기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特허발명의 不實施 또는 불충실한 實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을 證明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實시권의 許與는 거절되어야 한다.	○現行規定第42項 參照 ○改正案修正採擇
(5) 同盟國은 公益 특히 國家安保, 繁榮, 保健 또는 기타 國家經濟의 중요부문의 발전의 이유로 특	○現行規定 無 ○改正案과 同

内 容	備 考	内 容	備 考
허된 발명의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國內法으로서 하시라도 그 국가의 政府 또는 그 정부가 허가한 자에 의하여 特許된 發明을 利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할 권리를 갖는다.		할 수 있다.	
(6) 非自發的 實施權은 일반적으로 非排他的이며 또한 재 實施權賦與의 形태에서도 移轉될 수 없으나 그러한 實시권을 이용하는 기업 또는 營業權의 일부와 함께 移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現行規定第42項後段과 同 ○改正案修正採擇(非自發的 實施權으로서 專用 實施權削除)	그러나 이 非自發的 實施權은 전 용실시권의 기간만료후 18개월 이상 不實施 또는 불충분 실시를 이유로 그 특허권을 取消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現行規定無 ○改正案修正
(7) 特許權者가 받게되는 정당한 补償金額을 포함한 非自發的 實施權賦與 또는 공익상 이용에 관한 여하한 결정 또는 특허의 取消 또는 没收에 관한 여하한 결정도 해당 國內法에 의거, 높은 수준에서 독립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現行規定無 ○改正案과 同	(b) 開發途上國은 그 국가의 國內法으로 특허에 적용할 수 있는 비자발적 實시권제도를 규정하고 몰수 또는 취소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몰수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실시를 보증할 수 있는 비자발적 實시권의 출원자가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 實시권의 허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거나 몰수나 취소에 관한 결정이전에 허여된 非自發的 實시권의 수혜자가 실제로 충분한 실시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은 발명이 특허부여된 때로부터 5년이 만료되기 전에 국내에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실시된 때에는 당해 특허가 没受되거나 取消될 수 있음을 국내법으로 규정할 권리를 갖는다.	○現行規定無 ○改正案一部修正
(8) (3)(4) 및 (6)호의 규정에 포함된 여하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開發途上國은 아래 諸條項을 적용할 권리를 갖는다.	○現行規定無 ○改正案一部修正	(9) 앞의 再規定은 實用新案에도 準用한다.	○現行第5項과 同 ○改正案과 同
(a) 開發途上國은 특허된 발명이 特許의 所有者 또는 그의 허가에 의하여 그 국가의 領土內에서 특허 부여된 때로부터 30個月안에 實施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가 비자발적 實시권의 허여를 관장하는 國家當局이 만족할 수 있도록 特許의 不實施 또는 불충분한 실시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非自發的 實施權을 부여할 권리를 갖는다. 國內法이 특허받기 위한 이연 심사를 규정하고 그러한 심사절차가 特許出願日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기 不實施猶豫期間은 出願日로부터 [4년]으로 된다.	○現行規定無 ○改正案第6項後段의 修正採擇	2. 採擇의 意義	
(a bis) 非自發的 實施權은 特許權의 남용을 구성하는 여건이 있고 그리고 不實施 또는 不充分 實施가 그 남용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경우에 만약 그 국가당국이 비자발적 實시권의 허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4년반의 기간동안 專用 實施權으로	○現行規定無 ○改正案第6項後段의 修正採擇	이번 파리協約改正外交會議 第2次會議가 비록 끝을 맺지 못하고 第5條 1個條文의 採擇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重大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첫째, 그것은 先進國과 開發途上間에 利害關係가 交叉되는 가장 重要한 條項이기 때문에 이의 解決로 次期會議에서 開發途上國에 有利한 파리協約의 改正이 可能視되었다는 點이다.
		이번의 파리協約改正案에는 特許權의 一般的의 制限에 關한 第5條 外에 開途國 國民에 對한 料金의 割引, 優先權主張期間의 延長, 技術援助 및 情報의 提供等 여러가지로 開途國에 有利한 條項들을 包含하고 있는바 이들	

의 全部가 採擇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改正의 目的宣言에서 밝힌 바대로 開途國의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파리協約의 改正이 이루어 질 期待可能性이 增加한 것만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둘째, 오늘날 國際經濟關係에서 深刻히 論議되고 있는 이른바 南北問題의 改善을 위해서 國際工業所有權分野에 있어서 커다란 進步를 이룩했다는 點이다.

勿論 파리協約改正에 關한 많은 問題들이 아직은 未決狀態로 남아 있고 또 이들은 先進國들의 積極的인 協調가 없이는 그 成果를 期待하기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이제 國際間에도 算術的 平均的 正義만이 아닌 配分的 正義의 原理가 適用되는 時點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工業所有權分野에 있어서 論理의 抽象的 正義만이 아니라 各國間의 經濟發展의 隔差와 程度를勘案한 具體的 配分의 平均의 理論과 그에 따른 施策의 適用이 可能케 할 時點의 到來가 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에필로그

이번 나이로비 外交會議에서 우리에게는 開途國에 有利한 第5條가 採擇成 立되었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所得이 있었다.

韓國은 第2分科委員會 副委員長國으로 被選되었으며 開途國格의 代辦人役割을 하고 있는 가나代表, 主催國인 케냐의 法務長官 및 特許局長, 스위스 特許廳長 및 代表들, 美國代表團, 日本特許廳長官 및 代表團, 濠洲代表團, 프랑스 代表團 및 그밖의 開途國代表들과 WIPO의 A. Bogsch事務總長 Pfanner 및 Porzio 두 事務次長等을 招致하거나 招請받으면서 또는 個別的接觸의 機會를 갖고 友誼를

세째, 國際社會에서 開途國格의 입김이 차츰 強化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實證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國際政治는 強大國들이 左右하는 것이 事實이지만 國際社會에서 특히 先·開途國이 똑같이 1對1로 맞붙는 國際會議에서는 開途國의 數的優勢를 絶對로 無視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會議에서도 先進國들은 第5條를 可及的 Basic proposal에서 멀리하도록 換骨脫胎하려들었고 특히 美國은 만약 開途國이 願하는대로 改正이 된다면 그러한 協約의 當事國이 되지 않겠다고 威脅(?)했지만 採擇된 改正協約 第5條는 若干의 修正을 加함으로써 開途國에 關한 한 充分히 有利한 立場이 確保된 것이다.

아울든 이번과 같은 파리協約이 改正發效하게 될다면 開途國中에서도 韓國이나 브라질, 멕시코 또는 아르헨티나 같은 先發開途國 좀더 많은 惠澤을 보게 될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하루 빨리 파리協約이 改正돼서 發效될수 있도록 우리의 努力を 傾注하는 것이 得策이라 하겠다.

敦篤히 할 機會를 가졌던 것은 韓國을 알리고 理解시키는데 一助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10월 24일 케냐를 떠나 오던날 밤 나이로비 郊外 Rwraka에 있는 韓國人經營의 사파리 파크호텔 코리언 레스토랑에서 케냐에 駐在하고 있는 韓國商社 職員들과 僑民會長 및 몇분의 僑民들 그리고 KOTRA, 外換銀行 및大使館職員들을 모시고 가졌던 晚餐은 異域萬里 他鄉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鄉愁를 김치 맛으로 달래드리고자 했던 좋은기회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아울든 赤道의 曝陽 아래 白雪을 이고 있는 칠리만자로山과 케냐山이 位置한 케냐에서의 이번 파리協約改正外交會議는 韓國과 本人에게 매우 뜻깊은 會議였다.